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외 국 인 투 자 촉 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복귀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에 적용되는 혜택을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20.12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에 대한 세부내용 규정

3. 주요내용

가. 단지형 외투자지역 입주가 가능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시행령 제19조)

- 1) 개정 법률에서 단지형 외투자지역에 일정 요건을 충족한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임대대상 국내복귀기업 요건 및 임대료 비율 설정 필요
- 2) 국내복귀 투자규모 및 고용인원, 업종 등을 기준으로 기존 임대대상 외투자기업 요건과 동등한 수준에서 규정함
- 3) 국내복귀기업의 입지선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내복귀 증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제1호가목1) 중 “제6항제1호나목”을 “제6항제1호나목, 제7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6항제1호다목”을 “제6항제1호다목 및 제7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제6항제1호라목”을 “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6항제1호라목”을 “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1) 중 “제6항제1호다목”을 “제6항제1호다목 및 제7항제1호나목”으로 하고, 같은 목 2) 중 “제6항제1호라목”을 “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 3) 중 “제6항제2호”를 “제6항제2호 및 제7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운영자”를 “운영자나 비수도권 국내 복귀기업”으로, “한다)는”을 “한다)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를 “외국인투자기업등이 창출하”로 한다.

-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서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관한 사업장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나.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다. 국내복귀 투자 금액이 25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경우

2)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제1호가목

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3)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각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⑥ (생략) <u><신설></u>	제19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u>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국내복귀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 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 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을 국내 에 신설·증설하는 기업을 말한 다.</u> <u>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 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업</u> <u>가.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10 억원 이상으로서 「산업발 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첨단기 술 및 첨단제품에 관한 사 업장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1호에 따</u>

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

나. 국내복귀 투자금액이 50
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경영하려는 사업

다. 국내복귀 투자 금액이 25
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사업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300
억원 이상으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
항에 따른 사업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지식서비스산업 중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를 경영하는 경우

2)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0

억원 이상으로서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
16조의2제1항에 따른 산
업지원서비스업(제1호가
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
는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
은 제외한다)을 경영하는
경우

3)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0
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
조제1항제4호 각목에 따
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
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
설하는 경우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
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
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
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

⑧ -----

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6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

-----.

1. -----

가. -----

1) -----

----- 제6항제1호나목, 제7항제1호가목-----

2) 제6항제1호다목 및 제7항제1호나목-----

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 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 3)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가목 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 2) 제6항제1호라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 3) 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다목-----

나. 제6항제1호라목 및 제 7항제1호다목-----

다. -----

- 1) 제6항제1호다목 및 제7항제1호나목-----

- 2) 제6항제1호라목 및 제7항제1호다목-----

--

3) 제6항제2호의 사업

라. (생략)

2. (생략)

⑧ (생략)

⑨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⑩ · ⑪ (생략)

⑫ 제10항 및 제1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을 등 세 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3) 제6항제2호 및 제7항제2

호-----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

----- 운영자나 비수도권 국

내복귀기업----- 한

다)은 -----

---.

⑪ · ⑫ (현행 제10항 및 제11항과 같음)

⑬ -----

----- 외국인투자

기업등이 창출하-----

-----.

⑬ (생 략)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연 락 처	(044) 203 - 4069